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53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이철규·박충권·박상웅

서일준 · 김선교 · 박성민

김은혜 • 이인선 • 배준영

엄태영 · 나경원 · 강승규

조배숙 • 유상범 • 주호영

박준태 • 송언석 • 조지연

김상훈 • 이양수 • 권성동

의원(21인)

제안이유

반도체는 21세기 4차산업혁명·디지털·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산업 주도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세계 반도체산업 질서는 설계와 지적재산권, 소재·부품·장비,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분야는 국가별 '분업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최근 AI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선진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

설, 수출확대 등에 총력태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간에선 대규모 투자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에 제한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 수출도 20%대를 차지하며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도 장악해왔지만, 시장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세 배 이상 되는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세계 반도체 패권경쟁 및 동맹의 재편과 기술 경쟁 등이 겹쳐 K-반도체 전망은 불투명하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도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할과 비중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함.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

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 조).
-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등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사.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8조).

- 아.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도입함(안 제31조).
- 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

법률 제 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 계 조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 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등을 설계, 제조, 공급 등 사업화하는 산업
 -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공급하는 산업
 -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설계자산·소프트웨어·소재·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관련 시설을 제조·건설하는 산업

-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단지 중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입 지
 -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 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반도체산업 지원 • 육성 체계의 구축

제5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 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 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특례 제공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 운영 · 지정 ·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 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재정·행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 및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 ⑥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의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 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 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사항
 - 5.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 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사항
-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 (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연구소 등 소속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반도 체산
 - 업 등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3장 반도체산업 지원 기반의 조성

- 제11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 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②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

- 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예산의 이월 등)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

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5조(반도체산업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망·용수망·도로망의 설치·확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내용과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제18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제적인 연대 형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 공급·연구·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라야 한다.
-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적·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투자·운영 등 관련 일정 및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관의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 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사항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재정적 특례를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 제24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제조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4.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5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① 정부는 우수한 반도체 교육환경 조성 및 인력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반도체특성화대학등"이라고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운영과 연구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은 「고등교육법」 제3 2조에 따른 학생 정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 등에 따른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정원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반도체산업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 중 반도체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 제27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 2. 제20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조성
- 3. 제21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입주기관 지원
- 4.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

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 2.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 3. 제20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 ①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등에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공장 등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 총허용량을 배정할 때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1조(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2.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지정·운영
 - 3.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핵심적 필요인력 에 대한 국가 핵심인재 지정 및 지원
 - 4.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재·부품·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부지 할당,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 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 ·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 3.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3조(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 제34조(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 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 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 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 기준 적용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 제3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 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활용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대한 특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

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병역지정 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등

- 제38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0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자원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 제34조는 203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